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18
----------	------

2022. 3. 17.(목)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2022년 3월 8일
-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0일
- 라. 상정일자: 2022년 3월 17일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영주 의원)

###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심의위원회의 통합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설치 근거 조항 변경(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제159조
- 기금의 조성 각 호 중 3호(폐지학교 재산 매각대금)을 삭제(안 제5조)
-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용어 변경(안 제8조) 및 일부 조항 삭제(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3. 검토보고 요지

###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 가. 조례 개정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며,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에 맞춰 예산과 기금에 관련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사항인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제159조” 로, 제8조의 제목 “(회계공무원)” 을 “(회계관계공무원)” 으로 변경함.
- 또한, 위원회 통합운영을 위해 제11조에 각 호의 심의는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조항을 신설함.

- 같은 회기 심사되는 제정·개정 조례안에 따라 통합·운영하게 되는 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음.

통합위원회명	통합 운영(심의) 위원회	비 고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전부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	제정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일부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취지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인정되고, 개정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며,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회계공무원)”을“(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금”을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필요한 기금”으로, “학교장”을 “학교의 장”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의 합리적 관리·운용에 관한”을 “위원회는”으로,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교육청</u> <u>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u> <u>운용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 교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u>제142조</u>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교 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설 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 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학급 통폐 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 교부금 교부액</li> <li>2. 기금의 운용 수익금</li> <li>3. 폐지학교 재산 매각대금</li> <li>4.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li> </ol>	<p><u>충청북도교육청</u> <u>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u> <u>운용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제159조</u>----- ----- ----- ----- -----.</p> <p>제5조(기금의 조성)-----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lt;삭 제&gt;</li> <li>4. (현행과 같음)</li> </ol>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  
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  
을 지정한다.

1. ~ 2. (생략)

3. 기금출납원: 적정규모학교육성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제6조  
의 사업계획을 해당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관할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 의  
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합리적 관리·운  
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  
-----  
-----회계관계공무원  
-----.

1. ~ 2. (현행과 같음)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 사  
무관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조례 제  
6조제1항제1호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  
-----  
-----.

<삭 제>

<삭 제>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  
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  
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 호선한다.

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  
다.

<삭 제>

<삭 제>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삭 제>

1. 행정과장, 정책기획과장, 학교혁신과장, 예산과장

<삭 제>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삭 제>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삭 제>

나. 정부 출연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금융 업무에 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삭 제>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개교 시 일시에 교부되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에 대한 연차별 관리
- 기금 운용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예산 지원의 안정성 확보

## 2. 비용 발생 요인

- (세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 교부
- (세출)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교에 대한 지원,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 등

## 3. 관련조문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 교부액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학교통폐합, 학교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 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개선, 학교통학지원 등의 사업
2.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지원사업
3.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조례 제6조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전제함

나. 추계 결과: 116,243,225천원

1) 세입

가) 보통교부금: 110,469,980천원

나) 이자수입: 5,773,245천원

2) 세출

(단위: 천원)

관련조문	사업명	소요액
조례 제6조 제1항제1호	·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교 교육활동비 지원	36,581,726
	·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교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48,703,369
	·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교 통학지원	12,912,130
조례 제6조 제1항제2호및제3호	· 작은학교 지원 및 관할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비	18,030,000
조례 제6조 제1항제4호	·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16,000
계		116,243,225

다. 재원조달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 자체수입(이자수입)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b>세 입</b>	97,398,925	9,865,500	5,983,600	881,400	723,300	
보통교부금	96,469,980	9,000,000	5,000,000			
자체수입	928,945	865,500	983,600	881,400	723,300	
<b>세 출</b>	10,843,407	14,452,000	14,502,000	14,052,000	13,802,000	
제6조제1항제1호 (적정규모학교 육성교 지원)	9,013,407	12,600,000	12,600,000	12,100,000	11,800,000	
제6조제1항제2호및제3호 (작은학교 지원, 관할청의 사업추진)	1,830,000	1,850,000	1,900,000	1,950,000	2,000,000	
제6조제1항제4호 (기금 관리·운영 경비)		2,000	2,000	2,000	2,000	
<b>재원 조달</b>						
의존 재원	소 계	96,469,980	9,000,000	5,000,0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96,469,980	9,000,000	5,000,0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928,945	865,500	983,600	881,400	723,300
	자체수입	928,945	865,500	983,600	881,400	723,300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단위 : 천원)

구 분	6차년도 (2027년)	7차년도 (2028년)	8차년도 (2029년)	9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566,400	412,900	271,500	139,700	116,243,225	
보통교부금					110,469,980	
자체수입	566,400	412,900	271,500	139,700	5,773,245	
세 출	13,352,000	12,202,000	11,252,000	11,785,818	116,243,225	
제6조제1항제1호 (적정규모학교 육성교 지원)	11,300,000	10,100,000	9,100,000	9,583,818	98,197,225	
제6조제1항제2호및제3호 (작은학교 지원, 관할청의 사업추진)	2,050,000	2,100,000	2,150,000	2,200,000	18,030,000	
제6조제1항제4호 (기금 관리·운용 경비)	2,000	2,000	2,000	2,000	16,000	
<b>재원 조달</b>						
의존 재원	소 계				110,469,98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10,469,98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566,400	412,900	271,500	139,700	5,773,245
	자체수입	566,400	412,900	271,500	139,700	5,773,245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